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8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6.

발 의 자 : 이개호 · 임오경 · 이강일
전진숙 · 소병훈 · 어기구
안도걸 · 정진욱 · 서삼석
박 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화물운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관리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통상 10% 수준에서 주선수수료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상 주선수수료에 대한 법적 상한 기준이 없어 일부 주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대 40%이상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이 저하되고 있음. 이는 차주가 소득 보전을 위해 과속, 과적 및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가맹점 카드수수료 등 타 분야에서는 시장의 독과점 및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음. 화물운

송 시장에서도 주선사업자의 정당한 영업 이윤은 보장하되 과도한 폭리는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.

이에 운송주선 수수료의 범위를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고, 상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화물차 시장의 불투명·불공정한 주선수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(안 제 25조의2 신설 등).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운송주선 수수료)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계약의 중개·대리서비스에 대하여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해당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송주선 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제3항 중 “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”를 “제25조의2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”를 “요율의 한도를 초과하여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”로 한다.

제70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요율의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제25조의2(운송주선 수수료) ① <u>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계약의 중개·대리서비스에 대하여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해당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</u>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<u>운송주선 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제26조(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) ①·② (생략) ③ <u>운송주선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·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 ④ ~ ⑦ (생략)	제26조(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제25조의 2제1항에 따른----- -----<u>요율의 한도를 초과하여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</u>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7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제70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

부과한다. 1. · 1의2. (생략) <u><신설></u> 2. · 3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-----. 1. · 1의2. (현행과 같음) <u>1의3.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</u> <u>수수료 요율의 한도를 초과하</u> <u>여 수수료를 받은 자</u> 2. · 3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